

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
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은림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규정하였습니다.

- 또한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는 한편,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안 제1조(목적)에서 “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’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,
안 제2조(정의)에서 ‘이 조례에서 “처리시설”을 ‘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처리시설”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.
그리고 안 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서는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호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